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15
----------	------

발의연월일 : 2016. 12. 29.

발의자 : 이현재 · 김성태 · 이명수

김성찬 · 조경태 · 박인숙

김선동 · 김도읍 · 윤상직

김태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로 하여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수적이나,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에 비해 짧게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세무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고·납부) ① 금융·보험업 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 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u>2개월</u> 이내에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 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 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납부) ① ----- ----- ----- ----- ----- -- <u>3개월</u> -- ----- -----. ----- ----- -----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